#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 발의연월일: 2024. 6. 3.

발 의 자: 박충권・이인선・김승수

김성원 • 박준태 • 김선교

송언석 · 김기현 · 권성동

안상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8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97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20.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 2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 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생산 하는 자를 말한다.
- 2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24.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25.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 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26.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

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이동통신사업자는"으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제1호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을 "이동통신단말장치를"로 한다.

제32조의7제1항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이동통신사업자는"으로 한다.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 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 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 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 제32조의12(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 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32조의13(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4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의14(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 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 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의15(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16(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하 "분실·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2조의17(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4제1항·제3 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 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18(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한다.
-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을"을 "제32조의12제2항·제3항, 제32조의13제1항·제3항·제4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

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를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무소"로,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를 "또는 조사대상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조사대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32조의12부터 제32조의14까지 및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를 "조사대상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기통신사업자의"를 각각 "조사대상사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각각 "조사대상사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각각 "조사대상사업자"로 한다.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2항·제3항, 제32조의13제1항·제 3항·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

매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 2.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 4. 위반행위의 중지
-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6.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2항·제3항, 제32조의13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제32조의12제2항·제3항, 제32조의13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 조의12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 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의 고의 · 과실 여부
-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 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 1. 제32조의12제2항·제3항, 제32조의제13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 2. 제32조의11제1항, 제32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의13제1 항·제3항·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 3. 제32조의12제2항 · 제3항, 제32조의13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

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을 "이동통신서비스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 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이동 통신사업자는"으로,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을 "고유식별번호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3조와"를 "제52조의3, 제53조 및"으로 한다.

제9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15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5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32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4의3. 제32조의17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 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8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자
  - 2. 제32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 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 를 한 자
  - 3.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 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 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과한다"를 "부과하되, 제4호의8부터 제4호의18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8부터 제4호의18까지 ·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8호에"를 "제4호의9부터 제4호의14까지 · 제4호의17 · 제8호 · 제8호의3에"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5항제4호의15 · 제4호의18 · 제17호"로 한다.

- 3. 제3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4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 4의9. 제3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 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을 오인하게 한 자
- 4의10. 제32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서 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 4의11. 제32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 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 4의12. 제32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자

- 4의1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 4의14. 제32조의13제5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 4의15. 제32조의13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4의16. 제32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4의17. 제32조의17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 리점 또는 판매점
- 4의18. 제32조의18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
	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
	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u>말한다.</u>
<u>&lt;신 설&gt;</u>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
	신사업자를 말한다.
<u>&lt;신 설&gt;</u>	20.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
	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
	를 말한다.
<u>&lt;신 설&gt;</u>	2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
	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u>를 말한다.</u>
<u> &lt;신 설&gt;</u>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
	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
	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u>&lt;신 설&gt;</u>	2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

<신 설>

<신 설>

<신 설>

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 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 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 한다.

- 24.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
  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
  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25.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26.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 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통 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 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 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
    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
    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
    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
    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 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 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 익
-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 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1. · 2. (생략)

② (생 략)

-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 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 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된	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흔	⊒.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시	_ 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이	
속하는 대리점 • 판매점을 달	
한다.	

	고지) ① <u>이동통신사업자는</u>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
	정이용 방지 등) ①
	<u>.</u>
	1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u>이동통</u> 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 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 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 3. (생략)

② ~ ④ (생 략)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제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한다.

시도투기라마카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르 글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의 차단) ① <u>이동통신사업자는</u>

②·③ (생 략)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신 설>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 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 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2조의12(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 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 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 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

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13(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 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 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신 설>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 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 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 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 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 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 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 • 제시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 거부, 지연, 철 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 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 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

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 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 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 다.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

- ⑤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4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32조의14(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 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 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u><신 설></u>

<신 설>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 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 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 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 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 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 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32조의15(중고 이동통신단말장 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 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다.

<신 설>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인증의 기준・절차 및 인증기준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32조의16(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 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 설>

<u>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u> <u>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 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 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17(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4제1 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그 행위의일시 중지를 명할수 있다. 이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그 행위의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 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 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 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 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 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 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51 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 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 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 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이에 대한 불복 절 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8(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 설>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 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 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 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 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 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 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 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 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 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 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 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 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 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 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 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 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 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 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 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 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 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 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

-----

--제32조의12제2항·제3항, 제

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 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 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 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이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u>해당 전</u> 기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

<u>32소의13제1항 · 제3항 · 제4항,</u>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b>.</b>
②
전기통신사업
자(이동통신사업자의 특수관계
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
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
사업자"라 한다)의 사무소
또는 조사대상사업자의 업
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조
사대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32조의12부터 제32조
의14까지 및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u>다)의 사업장에</u>
③
<u>조사대상</u>
<u>사업자에게</u>

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④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 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 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 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 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 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 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 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 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 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 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생략)

<신 설>

<b>.</b>
④조사대상사업자의
<u>조사</u>
<u>대상사업자의</u>
<u> </u>
⑤
<u>조사대상사업자</u>
·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 12제2항·제3항, 제32조의13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 2.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 4. 위반행위의 중지
-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6.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 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 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 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 다)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 12제2항·제3항, 제32조의13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신 설>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 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 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 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에 대 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통신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제32조 의12제2항 • 제3항, 제32조의13 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 •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 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 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 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2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 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신 설>

금을 징수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 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
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
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
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 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제55조(손해배상)(생략)

<신 설>

<u>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u>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u>없다.</u>

- 1. 제32조의12제2항·제3항, 제 32조의제13제1항·제3항·제4 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제 3항을 위반하는 행위
- 2. 제32조의11제1항, 제32조의1
   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
   조의13제1항 · 제3항 · 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 · 제3항
   을 위반하는 행위
- 3. 제32조의12제2항·제3항, 제 32조의13제4항 또는 제32조의 14제1항·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5조(손해배상)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전파법」에 따 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 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 · 책자 · 인 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 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 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②·③ (생 략)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 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

<u> </u>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이동통신서비스를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장치의 <u>고유한 국제 식별번호</u> (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 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 회는 제53조와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내야 할 과 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생 략)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7 ① ~ ③ (생 략) <u><신 설></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אורט אוט אורט או
<u>제52조의3, 제53조 및</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유식별번호를--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5. ~ 8. (생략) <신 설>

제3	32조의]	[5제1형	눈에	叫.	른	인	증
에	필요한	· 업무	의	일부	를	대	통
- 령 i	벙으로	정하는	<u>-</u> }	바에	따	라	관
<u></u> 계	기관	또는	단	체에	우	탁	할
<u>수</u>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2조의16제1항을 위반 하여 분실 · 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 적으로 분실 · 도난 단말장치 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 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의3. 제32조의17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 계인을 포함한다)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 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 함한다)

5. ~ 8.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8제5항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 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 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 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 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 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 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 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자
- 2. 제32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 • 판매점 또는 다른 이 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 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 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3.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 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과태료) ① ~ ③ (생 저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세104조(과태료) ① ∼ ③ (현행
과 같음)
<b>4</b>
1. • 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⑤
<u></u> 부과하되, 제4호
의8부터 제4호의18까지, 제8호
의2 또는 제8호의3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
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u>한다</u>

1. ~ 4의7. (생 략) <u><신 설></u>

<u><신</u> 설>

<신 설>

<신 설>

1. ~ 4의7. (현행과 같음)
4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4의9. 제32조의12제2항을 위반 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4의10. 제32조의12제3항을 위반 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 니하거나 또는 계약서 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4의11. 제32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 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 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u>한 자</u>
<u>&lt;신 설&gt;</u>	4의12. 제32조의13제1항을 위반
	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
	<u> </u>
<u>&lt;신 설&gt;</u>	4의1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
	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u>자</u>
<u>&lt;신 설&gt;</u>	4의14. 제32조의13제5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
	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
	<u>를 한 자</u>
<u>&lt;신 설&gt;</u>	4의15. 제32조의13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u>&lt;신 설&gt;</u>	4의16. 제32조의16제2항을 위반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
	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u>&lt;신 설&gt;</u>	4의17. 제32조의17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

<신 설>

5. ~ 8. (생 략) <u><신 설></u>

<신 설>

9. ~ 17. (생략)

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18. 제32조의18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 8. (현행과 같음)
<u>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u>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u>자</u>
<u>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u>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9. ~ 17. (현행과 같음)
6
의9부터 제4호의14까지·제4호
<u>의17 · 제8호 · 제8호의3에</u>
제5항제4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	
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	
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